별첨1 **광고비 송출 지원 대상 매체**

□ 대상 : 지역 로컬 방송광고 매체(전국권 제외)

구분	방송사업자유형	세부사항
지상파 (TV/RADIO)	KBS	지역 로컬 방송 한정
	지역MBC	부산문화방송㈜, 대구문화방송㈜, 광주문화방송㈜, 대전문화방송㈜, 전주문화방송㈜, 춘천문화방송㈜, ㈜엠비씨충북, 제주문화방송㈜, 울산문화방송㈜, ㈜엠비씨경남, 목포문화방송㈜, 여수문화방송㈜, 안동문화방송㈜, 원주문화방송㈜, ㈜엠비씨강원영동, 포항문화방송㈜
	지역민방	㈜KNN, ㈜티비씨, ㈜광주방송, ㈜대전방송, ㈜울산방송, ㈜전주방송, ㈜청주방송, ㈜지원(G1), ㈜제주방송, 오비에스경인티브이㈜
	지역라디오	㈜경기방송, ㈜경인방송, 광주영어방송, 부산영어방송, TBS-eFM
	종교라디오방송(지역사)	CBS, BBS, CPBC, WBS, FEBC
IPTV		㈜케이티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
		㈜엘지유플러스
지역 SO		전국케이블TV방송국(SO) 91개사 (www.kcta.or.kr)

별첨2 업종별 소기업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별첨3 **방송광고의 금지 품목 및 방송시간 제한사항**

□ 개요 및 근거

o 방송법상 관련 규정

- 제2조 (용어의 정의) 21. "방송광고"라 함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말한다.
- 제33조 (심의규정)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심의규정"이라 한다)을 제정·공표하여야 한다.
  <중략>
  ② 제1항의 심의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중략>
  15. 법령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되는 품목이나 내용에 관한 사항
  16. 방송광고 내용의 공정성·공익성에 관한 사항

o 방송광고 금지 및 제한의 근거

- 일반 법규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內 법령/규칙')
- 기타 품목별로 개별법령상 규정이 있음.

※ 방통심의위 규칙이나 개별법령상 규정 어느 하나에 해당 시 방송광고가 금지·제한됨

※ 방송광고가 금지되거나 방송광고 허용시간을 제한받는 상품은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 불가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의2 제2항, 제59조의3 제2항)

□ 방송광고의 금지

o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

- **제41조(종교)**

  종교에 관한 방송광고는 종교단체의 행사를 고지하는 내용이나 종교 관련 제품의 판매에 관한 내용 이외의 종교.신앙에 관한 내용을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42조(정치)**

  방송광고는 정당의 행사안내, 행사고지, 정책홍보, 당원모집 공고 등 정치활동에 관한 내용을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령 또는 선거관리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3조(방송광고의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

2. 법령에서 금지된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상품과 용역에 대해서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1.「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2. 사설비밀조사업 및 사설탐정
3. 혼인매개, 이성교제 소개업. 다만,「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국내결혼중개업은 제외
4. 점술, 심령술, 사주, 관상등의 감정 및 미신과 관련된 내용
5. 무기, 폭약류 및 이와 식별이 어려운 모조품
6. 도박 및 이와 유사한 사행행위
7. 담배 및 흡연과 관련된 광고
8. 조제분유, 조제우유
9. 음란한 내용의 간행물, 영상제작물, 공연물,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정보.영상정보 및 문자정보

9의2. 성기구 및 그 밖에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 관련 용품

10. 금융관련법령에 의해 인.허가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금융업
11. 안마시술소
12. 알콜성분 17도 이상의 주류

③ 방송광고는 이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상품과 용역 등을 주된 소재로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소비자에게 광고효과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4조(방송광고 출연제한)

①「국가공무원법」 또는「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은 방송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광고에 출연하는 경우
2. 법령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정치광고에 출연하는 경우
3. 소속기관의 홍보를 위하여 제작한 방송광고에 출연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방송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o 품목별 개별 법령상 금지사항

구분	근거 법령	내용
조제분유, 조제유류	식품 등의 표사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o 조제유류에 관한 광고는 금지됨** ※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6) 식품등 광고 시 준수사항(제8조 관련) 3. 조제유류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광고 또는 판매 촉진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별표6 3.	가. 신문·잡지·라디오·텔레비전·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다만, 인터넷에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시사항을 게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조제유류** - 근거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 정의 : 조제유류라함은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하고 이에 영유아의 발육에 필요한 무기물, 비타민 등 영양소를 첨가하여 모유의 성분과 유사하게 가공한 것을 말한다
병원, 의원 광고	의료법 제56조 제3항	**o 병원, 의원광고를 포함한 의료광고에 대하여는 방송광고가 금지됨** ※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③의료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하지 못한다. 1.「방송법」 제2조 제1호의 방송
전문 의약품 광고	약사법 제68조 제6항	**o 전문의약품에 대한 방송광고는 금지됨** ※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12호까지의 감염병의 예방용 의약품을 광고하는 경우와 의학·약학에 관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약전문매체에 광고하는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문의약품 2. 전문의약품과 제형, 투여 경로 및 단위제형당 주성분의 함량이 같은 일반의약품 3. 원료의약품 **※ 전문의약품** - 근거 : 약사법 제2조 9항 및 10항 - 정의 : 일반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을 말함 - "일반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말함 가. 오용·남용될 우려가 적고,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나. 질병 치료를 위하여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다. 의약품의 제형과 약리작용상 인체 미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의약품

* 선거 관련 광고 부분 생략

□ 방송광고의 제한 : 특정 시간 대 방송광고 금지 등

구분	근거법령	내용	관계법령
주류광고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43조의2 제1항	**o 주류광고 또는 대부업광고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에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1. 텔레비전 방송광고 : 07:00 - 22:00 2. 라디오 방송광고 : 17:00 - 익일 08:00. 다만, 08:00-17:00의 시간대라도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전후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국민건강증진법

구분	근거법령	내용	관계법령
청소년 유해 매체물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43조의2 제2항	**o 청소년유해매체물(영화, 음반, 비디오, 간행물 등을 포함한다)의 방송광고는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광고시간 또는 전후 토막광고 시간에 편성·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 청소년 보호법 제18조(방송시간 제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방송프로그램, 옥외광고물·상업적 광고선전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 중 방송을 이용하는 매체물은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에 방송하여서는 안된다. 청소년 보호시간대 - 평일 : 오전7시~9시, 오후1시~10시 - 토요일, 공휴일 및 방학기간 : 오전7시~오후10시	청소년 보호법
공직선거의 광고모델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2조	**o 방송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모델이 된 광고를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후보자의 성명, 경력, 사진, 음성 또는 상징을 이용하는 등 후보자에게 선거 운동 효과를 주는 광고 또한 같다. ※ 대통령선거는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30회 이내, 국회의원선거는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15회 이내 방송가능	공직 선거법
어린이 의약품 및 유료전화 정보 서비스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43조의2 제3항	o 어린이의약품의 방송광고 및 유료전화정보서비스의 방송광고는 **어린이를 주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광고시간 또는 전후 토막광고시간**에 편성·광고 되어서는 아니 된다.	
고열량 저영양 고카페인 함유식품 TV광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 1항, 시행령 제7조의 2	o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식품을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자는 식품이 아닌 장난감 및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광고 금지 o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식품 TV 광고 제한** **- 오후 5~7시 광고 금지** **- 어린이 주시청 프로그램 중간광고 금지**	
대부업광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	**o 대부업자 등은 다음 시간대 방송광고 금지** - 평일 : 오전 7시~9시, 오후 1시~10시 - 토요일 및 공휴일 : 오전 7시~오후10시	(대부업 협회) 대부금융 광고 심의규정
저축은행 광고	(저축은행 중앙회) 저축은행광고 심의규정	**o 저축은행은 다음 시간대 방송광고 금지** - 평일 : 오전 7시~9시, 오후 1시~10시 - 토요일 및 공휴일 : 오전 7시~오후10시	

※ 어린이 시간대 광고방송 자막 표기의무

o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해야 함 (방송법 제73조 1항)

o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의 프로그램 및 토막광고 시간에 화면 좌 상단 또는 우 상단에 화면 크기의 64분의1 이상의 크기로 “광고방송”이라는 자막을 계속해서 표기해야 함 (방송법시행령 제59조 1항)

<참고>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개정 내용(2012년 이후)

o **2012.12.12. 개정 / 2013.1.1 시행**
- (제43조 제2항) 2013년 1월 1일부터 ‘먹는 샘물’에 대한 방송광고 가능

o **2014.1.9 개정 / 2014.1.15. 시행**
- (제18조) 최상급 표현 등 진실성 관련 심의기준 강화
- (제21조) 사투리 사용 관련 심의기준 마련
- (제23조) 어린이·청소년 보호 관련 심의기준 보완, 가맹사업 및 구인 관련 심의기준 신설

o **2014.12.24. 개정 / 2014.12.30. 시행**
- (제22조 제2항, 제3항) 동요.민요 사용규제 합리화(동요 개사 사용 금지, 민요 개사 사용 시 상품관련 및 상품사용 권유 표현 금지)

o **2015.10.8 개정 / 2015.10.15 시행**
- (제47조, 제48조) 방송심의규정 간접광고 및 가상광고 관련 심의기준 신설
- (제16조 제6항) 비교광고 심의기준 보완
- (제43조 제2항 제9호의2) 성기구 등의 방송광고 금지
- (제43조의2 제1항) 대부업 방송광고 제한시간 신설

o **2016.12.22. 개정 / 2017.1.1 시행**
- (제18조 제5항) 방송광고 관련 중요 정보 고지 명확화
- (제40조의4, 제43조 제2항) 젖병, 젖꼭지 등 수유보조제품 방송광고규제 완화

o **2019.9.27. 개정 / 2019.9.27. 시행**
- (제11조 제1항) 저작물 보호를 위한 심의 기준 정비
- (제11조의2) 인권 관련 심의기준 보완
- (제13조 제2항) 성별 관련 심의 기준 정비
- (제19조의2 제3항) 자료 인용시 필수 고지 사항 명확화
- (제35조 제4항) 수익형 부동산 관련 심의기준 보완

별첨4 소상공인 정책지원 배제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도매업은 신청가능(사업자등록증 상 상호명, 업태·종목란에 "수제맥주" 기재 여부로 판단)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221 중	주류 소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소매업은 신청가능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5102	여관업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표준산업분류	업 종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